

법무부령

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「법무자문위원회규정」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무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「법무자문위원회규정」 제 3조 각 호에 대하여 법무자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함(안 제3조).
- 나.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권자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「민법」·「상법」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
분과위원회를 둔다”를 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
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분과위원회는 「법무자문위원회 규정」 제3조 각 호에 대해 위원회
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”을 “법무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「법무자문위원회 규정」에 따른 법무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「민법」·「상법」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. 다만,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	제2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「법무자문위원회 규정」에 따른 법무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「민법」·「상법」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. 다만,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	제2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	---	-----
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한다.	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한다.	②	각	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-----
제3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 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분야별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.	제3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 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분야별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.	제3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 ①	분과	-----
② (생략)	② (생략)	②	(현행과	같은)
제5조(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) 위	제5조(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) 위	제5조(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)	법	-----

<u>원장</u>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	<u>무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--	---